

1. 개정 이유

- 「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조사기관 및 조사요원별 자격기준은 고고학적 특성을 갖는 매장유산의 범위에 국한되어 있음
 - 현재 매장유산 조사기관은 총 171개로 지질유산 조사에 특화된 기관 부재
- 이에 「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지질유산 관련, 지질유산의 특성에 맞는 조사기관 및 조사요원별 자격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지질유산 발굴조사 조사요원별 자격기준 및 조사기관 등록기준 마련
(안 제14조제1항, 별표 3, 별표 4)
 - 육상발굴조사기관을 고고분야와 지질분야로 나누고, 지질분야 발굴조사의 조사요원별 자격기준(별표 3)과 조사기관 등록기준(별표 4)을 신설함

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법률안

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육상발굴조사기관,”을 “육상발굴조사기관(고고분야, 지질분야),”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 기준 등)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는 육상지표조사기관, <u>육상 발굴조사기관</u> , 수중지표조사기 관, 수중발굴조사기관으로 나눈 다. ② ~ ⑦ (생략)	제14조(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 기준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육상발굴조 사기관(고고분야, 지질분야)</u> , -- -----. ② ~ ⑦ (현행과 같음)